

실기시험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1) 주행속도 유지	5	○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시마다 (단, 가속구간 제외)
(2) 시동상태 유지	5	○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 4천 RPM 이상 엔진 회전 시마다
(3)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 출발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 진입 후 방향지시등을 끄지 아니한 때
(4) 횡단보도 일시정지	5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 앞범퍼가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5)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 경사로 정지 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6) + 형 교차로 통과	5	○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 교차로내에서 20초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마다
	10	○ 신호위반시마다(정지선 침범 포함)
(7) 기어변속코스의 전진 (자동변속장치 자동차 경우 제외)	10	○ 기어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8)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한 경우 ○ 3초이내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9)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 한 때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은 경우

【실격기준】 ※반드시 숙지하여 실격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

합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시험 중 실격에 해당할 경우 시험은 강제종료됨)

1. 좌석안전띠 착용을 하지않은 경우(출발전 ~ 종료시까지)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해진 주행코스를 이탈한 경우
4.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6. 시험항목(5) 수행 시, 경사로 정지 검지구역 내에 진입하여 정지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뒷바퀴가 검지구역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7.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이 어려운 경우
8. 1~9까지 시험수행 총 시간이 6분(육분)을 초과한 경우

【장내주행시험 순서】

출발코스 ⇒ 횡단보도 ⇒ 경사로코스 ⇒ 신호교차로 코스(직진) ⇒ 신호교차로 코스(좌회전) ⇒ 가속코스 ⇒ 돌발상황 급정지 ⇒ 종료코스

【 장내주행시험 안내도 】

- * 시험항목 (1), (2)는 모든 주행구간 적용
- * 그 외 항목은 안내도 표시에 따라 채점

